##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재물손괴·범인도피교사·절도

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. 5. 28. 2012고단2475,2012고단2803(병합),2013고단259(병합),2013고단45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창섭(기소), 이재연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영수(국선)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(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압제317호)를 각 몰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